

대 법 원

제 2 부

판 결

사 건	2007다73918 중재판정취소
원고, 상고인	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현 담당변호사 홍일표 외 3인
피고, 피상고인	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하민호 외 2인
원 심 판 결	서울고등법원 2007. 9. 12. 선고 2006나107687 판결
판 결 선 고	2010. 6. 24.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를 본다.

1.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

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, 피고가 이 사건 중재절차에서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.

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.

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2.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

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, 피고가 이 사건 중재신청을 함에 있어 청구권원으로, ① 이 사건 물품거래가 추후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위 물품대금에 과세되는 부가가치세액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고, ② 원고가 면세포기조치를 해태함으로써 피고가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며, ③ 피고가 세무서의 과세조치로 인하여 이 사건 물품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납부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선택적으로 위 약정금청구, 손해배상청구,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함에 대하여, 원고는 피고의 위 약정금청구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상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는 물품대금에 포함되는 것이고 피고의 그 물품대금에 대한 청구권은 「민법」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.

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, 원고가 이 사건 중재절차에서 한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은 피고의 선택적 청구 중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약정금청구에 대한 것으로 봄

이 상당하고, 여기에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(대법원 1998. 5. 29. 선고 96다 51110 판결 참조).

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중재절차에서 위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.

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.

한편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들은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.

나머지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.

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.

3.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

「중재법」 제32조 제2항은 “중재판정에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. 다만,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중재판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”라고 규정하고 있고,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은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서 ‘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’을 증명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, 당사자 간에 이유의 기재를 요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없는데도 중재판정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된다. 이 경우 ‘중재판정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’라 함은 중

재판정서에 전혀 이유의 기재가 없거나 이유의 기재가 있더라도 불명료하여 중재판정이 어떠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판명할 수 없는 경우와 이유가 모순인 경우를 말하고, 중재판정서에 이유의 설시가 있는 한 그 판단이 실정법을 떠나 공평을 그 근거로 삼는 것도 정당하며, 중재판정에 붙여야 할 이유는 당해 사건의 전제로 되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한 판단을 나타낼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고 중재인이 어떻게 하여 판단에 이른 것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고, 또한 그 판단이 명백하게 비상식적이고 모순인 경우가 아닌 한, 그 판단에 부당하거나 불완전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, 이 부분 원심의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, 이 사건 중재판정이 이유 자체로 모순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.

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재판정 취소사유로서의 이유모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.

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.

4.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

「중재법」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는 ‘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’란 단순히 중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거나 중재인의 법적 판단이 법령에 위반되어 중재판정의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, 중재판정이 명하는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

